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58
----------	-------

발의연월일 : 2022. 3. 4.

발 의 자 : 이병훈·유정주·오영훈
박 정·이상현·어기구
양향자·김철민·신동근
이용우·전재수·윤영덕
홍성국·김영배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함.

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중에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점검하기 전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 선고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근로 등을 하는 사람이 성범죄

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 선고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성범죄자가 근로 등
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및 제67조제2항제1호
의2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성범죄자 신고의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근로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 선고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6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7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u><신 설></u> 2. (생 략) ③ ~ ⑤ (생 략)	<u>제56조의2(성범죄자 신고의무) 아</u> <u>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근로</u> <u>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u> <u>사람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u> <u>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동</u> <u>·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u> <u>그 신고내용을 신고하여야 한</u> <u>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을 선</u> <u>고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아동</u> <u>· 청소년관련기관등에서 퇴사</u> <u>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u> <u>다.</u> 제6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56조의2를 위반하여 아</u> <u>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u> <u>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u>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